

[별표 1]

지진구역(제7조제1항관련)

지진구역	해 당 행 정 구 역
I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II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별표 2]

중요도(제7조제1항관련)

중요도	특	1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발전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아동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및 아파트 - 3층 이상의 학교	중요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별표 3]

등분포적재하중(제11조관련)

(단위 : kN/m²)

종 류		건 축 물 의 부 분		적재하중
1	주택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2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3
2	병원	가. 병실과 해당 복도		2
		나.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3
3	숙박시설	가. 객실과 해당 복도		2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5
4	사무실	가.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2.5
		나. 로비		4
		다.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5
		라. 문서보관실		5
5	학교	가. 교실과 해당 복도		3
		나. 로비		4
		다. 일반 실험실		3
6	판매장	라. 중앙물 실험실		5
		가. 상점 및 백화점(1층 부분)		5
		나. 상점 및 백화점(2층 이상 부분)		4
		다. 창고형 매장		6
7	집회 및 유흥장	가. 로비, 복도		5
		나. 무대		7
		다. 식당		5
		라. 주방(영업용)		7
		마. 극장 및 집회장(고정식)		4
		바. 집회장(이동식)		5
		사. 연회장, 무도장		5
8	체육시설	가.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
		나. 스탠드(고정식)		4
		다. 스탠드(이동식)		5
9	도서관	가. 열람실과 해당 복도		3
		나. 서고		7.5
10	주차장	옥내 주차구역	가. 승용차 전용	4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8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2
		옥내 차로와 경사로	가. 승용차 전용	6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0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6
옥외	가.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2		
	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16		
11	창고	가. 경량물 저장창고		6
		나. 중량물 저장창고		12
12	공장	가. 경공업 공장		6
		나. 중공업 공장		12
13	지붕 및 옥상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1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2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
14	기계실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5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
15	광장	옥외광장		12

[별표 4]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제12조관련)

(단위 : kN/m²)

지 역	지상적설하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춘천시, 서산시, 청주시, 포항시, 군산시, 전주시, 충무시, 목포시, 여수시, 제주시, 서귀포시, 진주시, 울진군, 이천시	0.5
인천광역시	0.8
속초시	2.0
강릉시	3.0
울릉군, 대관령(강릉시 성산면, 평창군 도암면)	7.0

* 위 지역외의 지역은 지상적설하중 값을 0.5kN/m²로 하되, 실제의 조사·연구에 의한 수직최심적설 깊이 및 눈의 평균 중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별표 5]

지역별 기본풍속(제13조관련)

(단위 : m/sec)

지 역		기본풍속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구리시, 오산시, 평택시, 시흥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안성시	30
강원도	양평군,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군, 파주시,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	25
	속초시, 강릉시, 양양군	40
	고성군(거진읍, 간성읍), 동해시, 삼척시	35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인제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원주시, 평창군, 홍천군	25
	서천군(장항읍)	40
	태안군, 서산시, 청주시, 보령시(대천읍), 서천군, 태안군(안면읍), 연기군(조치원읍), 천안시, 홍성군, 아산시	35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당진군, 천안시(성환읍), 진천군, 증평군	30
	울성군, 청양군, 금산군, 영동군, 공주시, 논산시, 제천시, 충주시, 부여군, 보은군, 단양군, 괴산군, 옥천군	25
	포항시, 울릉군, 경주시(감포읍)	45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김해시(외동)	40
	울산광역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해시, 김해시, 마산시, 창원시, 양산시, 울산군, 경주시, 남해군, 사천시	35
	경주시(건천읍), 함안군(가야읍), 밀양시(삼랑진읍), 영덕군	30
제주도	대구광역시, 영주시, 구미시, 김천시, 영천시, 안동시,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산시, 청도군, 의령군, 영동군(추풍령면),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문경시,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고령군, 창녕군, 함천군, 밀양시	25
	군산시	40
	목포시,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옥구군, 익산시, 해남군, 장흥군(관산읍, 대덕읍), 고흥군	35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30
	전주시, 진안군, 무주군, 담양군, 부안군, 남원시, 순창군, 구례군, 고창군, 정읍시, 장수군, 순천시(송주읍), 임실군	25
	전지역	40

※ 위 지역외의 지역은 건설지점 부근의 유효한 관측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별표 6]

지역계수(제14조제2항관련)

지진구역	해 당 행 정 구 역		지 역 계 수
I	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0.11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II	도	강원도 북부(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춘천시, 속초시), 전라남도 남서부(무안군, 신안군, 완도군, 영광군, 진도군, 해남군, 영암군, 강진군, 고흥군, 함평군, 목포시), 제주도	0.07

[별표 7]

중요도계수(제14조제2항관련)

중요도 구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중 요 도 계 수	
		도시지역	그 외의 지역
특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발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5층 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	1.2
1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및 아파트 · 3층 이상의 학교	1.2	1.0
2	· 중요도 구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0	0.8

[별표 8]

지반의 허용지내력도(제18조관련)

(단위 : kN/m²)

지 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도
경암반	화강암· 석록암· 편암· 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0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도 각각의 값의 1.5배로 한다.
연암반	편암· 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혈암· 토단반 등의 암반	1000	
자갈		30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모래 또는 점토		100	

[별표 9]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제53조제1호관련)

(단위 : mm)

지 지 조 건	주변이 고정된 경우의 두께	캔틸레버의 두께
$\lambda \leq 2$ 의 경우 1층 두 방향으로 배근한 콘크리트슬래브	$\lambda \cdot \ell / (16 + 24\lambda)$	-
$\lambda > 2$ 의 경우 한 방향으로 배근한 콘크리트슬래브	$\ell \times / 32$	$\ell \times / 10$

비고 λ : 콘크리트슬래브의 장변 및 단변의 각 순경간(純徑間)의 비
 ℓ : 콘크리트슬래브의 단변의 순경간(밀리미터)